

의안 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5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학 구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5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4. 28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5. 2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 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함.

2. 주 요 골 자

- 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제2조)
- 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됨(안제3조, 제5조)

다.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시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봄(안제7조, 제6조)

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제8조, 제10조)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본 업무에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였음.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음.

결과적으로 관련법이나 지방심의위원회의 운영취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음.

참고로 동법 제44조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 출자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의결권 또한 행사치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중앙의 '95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의거 투자사업비 1,000억원 미만만 심의하게 되겠음.

다만, 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